제2주제 발제문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이 승 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 유튜브 채널 □□을 운영하는 A씨는 오랫동안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 퇴직했다. 2018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 수석 B씨가 국정농단 관련 재판부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B씨는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 없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허위 사실로 B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도 내용은 공적 인물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서 공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씨더러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어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A씨가 구속되었을 때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1)]

만약 A씨의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했더라면 인신구속, 명예훼손죄 확정,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확정과는 다른 해법, 이를테면 중재위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의 방식으로 해당 방송을 정정하거나 혹은 열람을 차단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했을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은 그런 대안적인 해결 방식을 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언론중재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언론중재 제도는 도입 초기에, 언론 활동을 규제하는 데 쓰이거나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이 제도를 도입한 '언론기본법'이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1987년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 제

1) 동아일보 (2020.7.8.); 한국일보 (2020.8.21.); 조선일보 (2020.10.8.); 연합뉴스 (2024.4.17.); 법률신문 (2024.2.23., 2024.4.17.); 대법원 2024.2.8. 2020도14521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3.28. 2024머33271.

도는 오히려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계수되었고 1996년에는 반론권이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잘못된 인식표를 떼고 본연의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권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찾았다. 여러 법률에 분산됐던 피해구제 제도를 2005년 ‘언론중재법’으로 체계화한 것이나 2009년 포털과 IPTV를 법 적용의 대상에 편입시킴으로써 구제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표 1> 참조). 또 피해를 야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삭제나 검색 차단 같은 방식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상당히 급격하고 본질적이며, 폭넓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거의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인다. 현행법의 ‘언론’이라는 개념이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거나(양재규·김창숙, 2011),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 분류법에다가 새로 등장한 ‘인터넷’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황용석, 2014; 박아란, 2015),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기능’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언론정보를 획득, 공유하는 현상이 확대, 심화하는 현실에서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때나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시기의 매체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론정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정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2024)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뉴스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인쇄 미디어 16%, 방송 62%, 소셜미디어 44%,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79%로 나타났다. 2016년 그 비율은 각각 28%, 71%, 32%, 86%였다. 뉴스의 공급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뉴스 생산자’, ‘언론’의 개념의 변화로 이어진다. 광고비 부문의 변화를 보면 전통 미디어의 위상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1997년 한국의 총광고비 53,762억 원 중 신문·잡지·TV·라디오 등 전통 매체가 차지한 비율은 76.6%였다. 신문은 39.5%, TV는 28.8%였다. 당시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비는 0.7%인 376억 원이었다. 20년 후인 2017년 4대 전통 미디어의 광고비는 35,584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 111,847억 원의 31.8%로 줄어들었다. 대신 온라인 미디어의 광고비는

34.3%로 늘어났는데, 2021년 기준 그 비율은 각각 23.6%와 53.7%였다. 해당 미디어의 광고비와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가 해마다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쓰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주들이 특정 광고 미디어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 매체에 광고주들이 목표로 하는 이용자들이 와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이승선, 2023). 각 매체의 광고비와 그 비중의 변화는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980년 말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의 '언론' 개념을 전수한 현행 '언론중재법'의 '언론'의 개념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언론중재 제도에 있어서 '언론'은 '언론기본법' 시기나 '언론중재법' 시기를 불문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의 '언론' 규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 법의 관할에 두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언론기본법'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매체 중심적으로 규정된 '언론' 개념은 오래전부터 법률이 작동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매체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거나, 기능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양재규·김창숙, 2011; 황용석, 2014; 박아란, 2015, 2025). 이를테면 '언론중재법'의 '언론'은 관련 법에 규정한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을 의미하며 포털은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돼 '언론 등'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나 영향력 차원에서 기성 '언론'을 능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뉴스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는 '시사/뉴스 정보' 플랫폼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언론중재 제도에 의한 피해구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법의 '언론' 규정은 기성 언론은 물론 소셜미디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홈페이지까지 '언론사'로 규정해 공정한 선거 보도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 너무 무디다. 가히 입법적 방치라고 할 만하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공직선거 시기에 해당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 기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설치·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사가 제작한 동일한 영상이라도 방송매체를 통해 노출된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구조다.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는 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인터넷언론사’는 ‘신문법’에 규정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이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 즉, 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언론사’ 규정은 2004.3.12.개정·시행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러한 변화를 담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이후 20여 년간 입법적으로 치유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시사 정보의 원천으로써 활용하는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아예 ‘언론’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의 응답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언론사의 인식 조사에서는, 유튜브가 기성 언론에 이어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 2위로 선정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1위로 ‘등극’하기도 했다. 양재규(2022)에 따르면 2021년 한 조사에서 디지털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40.8%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언론’이라고 인식하였고, 언론성을 부정한 응답은 26.2%였다. 양재규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미 대세 미디어로 자리를 잡았고,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주요 선거 채널은 유튜브였다. 문제는 위와 같은 유튜브에 대한 언론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내지, 현실 상황이 법적 지위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 유튜브는 언론이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한데, 원인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의 언론 관련 법률 체계에 있다는 것이다(양재규, 2022).

한편 언론중재위원회(2024)에 따르면, 언론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존 언론과 동일하게 해당 법원의 ‘언론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했다. 판결의 내용을 보더라도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을 언론사와 동일한 지위에 놓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판결 법리를 적용해 정정보도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했다. 인용된 경우의 정정보도문 형식은 기성 방송사 대상 정정보도문 형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언론중재위원회, 2024).

다섯째,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는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한 인터넷의 발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용상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도 기존 법리에 따라 자유와 책임이 부여되지만 몇 가지 특이점이 있다. 우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는 용이성, 신속성, 전파성,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며 그에 대한 구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웹에 보존되고 언제나 검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에 큰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는 정보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피해구제의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기성 언론의 경우 언론 피해구제 법제는 1회적 전파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쳤으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 쉽게 전파되고 검색되며 시간제한 없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제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박용상, 2025a, 34-36).[2)]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나 입법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입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2009년 포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언론 등'의 범주로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언론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보고서"를 펴내고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당시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외에도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피해구제의 방법과 내용을 확대하려는 일단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입법안 중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이미 권형둔(2024)이나 김주용(2025) 등 일련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제안들이 제시된 것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향후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언론중재 제도를 위한 입법 개선을 염두에 두고 '언론중재법' 제정·시행 이후 국회에 발의된 전체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한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 제안을 하고자 한다.

---

2) 인터넷에서 개인 이용자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에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법 제44조의2),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법 제44조의10),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아내는 방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이 그것이다(박용상, 2025a, 36).

2.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는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에 도입되었다. 동법은 그 목적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에서 '언론'은 "신문, 통신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하는 것, '언론인'은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 활동에 참여하여 사상 및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언론'은 미디어 기업으로서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한편, '**언론**의 자유등'을 규정한 동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국민 일반이 가진 표현 자유 활동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양재규·김창숙(2011)은 언론기본법의 '언론'에 대한 정의는 헌법상의 언론 개념 및 언론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언론의 개념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작위적이라고 비판한다(양재규·김창숙, 2011, 62-64).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언론'(제2조 제1호)이나 '언론사'(제2조 제12호) 규정은 언론기본법의 해당 규정 방식이나 내용과 같다.[3] 언론중재법은 2009년 IPTV와 포털을 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을 한 후 별다른 입법적 성과 없이 유지됐다.[4] 자연스럽게 이 법의 언론 개념 역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의 생산과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언론중재 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법적 변화

시기	관련법/결정	내용	비고
1981	언론기본법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반론권 제도 도입 언론중재위원 (30-60)	언론기본법제정(1980.12.31.)
1987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반론권제도 계수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언론중재위원 (40-70)	정간법 제정(1987.11.28.)
1991	종합유선방송법	중재제도 도입	종합유선방송법제정

3) '언론중재법'의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4) 박아란에 따르면 '언론' 개념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섭하면서 발전한 개념인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범주를 여전히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한정한 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를 법 적용 대상으로만 추가하여 포섭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언론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한다.(박아란, 2015).

		제45조(정정보도청구권)	(1991.12.31.)
1996	정기간행물법	‘반론보도청구권’ 으로 개정 직권중재결정제도 도입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 인정 국가・지자체, 기관단체 반론권 인정 불복절차 도입 언론중재위원 (40-80)	정간법 개정(1995.12.30.)
1997	공직선거법	선거보도관련 반론보도청구권 도입 제8조의3(방송), 제8조의4(정간물)	공직선거법 개정(1997.11.14.)
2005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권’ 도입 조정 외 ‘중재’ 도입 손해배상 조정・중재 인터넷신문 조정・중재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고충처리인 도입 언론중재위원 (40-90)	언론중재법제정(2005.1.27.) 일부 조항 위헌결정(헌재 2006.6.29. 2005헌마165등)
2006	헌법재판소결정	고충처리인제도, 위헌아님 고의, 과실없는 정정보도, 위헌아님 정정보도청구 가처분절차심판, 위헌 부칙 소급효, 진정소급입법으로위헌	헌재 2006.6.29. 2005헌마165등
2009	언론중재법	포털・언론닷컴・IPTV 조정・중재 정정보도청구소송-민사소송법적용	언론중재법개정(2009.2.6.)
2011	언론중재법	법문장 한글로, 어려운 용어 쉽게[5]	언론중재법개정(2011.4.14.)
2018	언론중재법	언론중재위원 결격사유 일부개정[6]	언론중재법개정(2018.12.24.)

자료: 이승선(2011, 8-13) 재구성

언론의 자유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설령 국민을 나쁜 사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비록 언론보도가 허위일지라도 책임을 묻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기 통치’로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도 있다. 어떤 표현이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표현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기 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표현이 보호받는다는 것인데 이 입장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화자의 권리가 아니라 청자의 권리가 된다(양재규, 2025, 142-143). 박용상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 규제를 주창하는 견해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능화에 불가결한 제도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해

5) 제1조(목적)의 ‘명예나 권리’를 ‘명예 또는 권리’로, 제2조(정의)의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언론이라 함은’을 ‘언론이란’으로 바꾸는 정도의 개정이다. 또 ‘법익’(法益), ‘공적’(公的), ‘정보원’(情報源) 등 일부 용어에 한자를 병기했다.

6)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2항 제4호의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개정한 것이 전부다.

왔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소극적 성격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결정으로서 모든 법 영역에 실현되어야 할 객관적 가치를 가지며, 국가 전체적 질서에 구성적 기능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언론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모든 국면에서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진다고 본다. 박용상에 따르면 '언론'의 헌법적 지위는 여론 형성에 참여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해 고찰되어야 한다(박용상, 2013, 103-105, 10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내용으로서, 의사 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는데, 의사 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 표현 또는 의사 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음반이나 비디오는 물론[8] 광고물[9],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이나 대화방도 헌법상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10]

위와 같은 '언론'의 기능이나 자유 보장의 의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우리 역사에서 사용돼 온 '언론'의 기능, 개념과 괴리가 사실상 없다. 중국 고전을 비롯 한국 역사 속의 언론 개념을 연구한 김영주는 '언론'을 중국 고전에서 사용된 바대로 '어떤 논제에 관해 바른말 또는 결점을 들어 비난·공격하는 말을 통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일(言語議論)'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조선시대의 경우 '언론'의 유사 용어로 '간쟁'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김영주는 우리 선조들이 일상적 용어인 '언론'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쟁(諫諍)'이라는 단어를 '언론'과 유사 개념으로 삼국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줄기차게 사용했다고 본다. 물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는 그 이전 시기와 달리 '언론'이라는 단어 역시 '일상적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조선왕조실록'에 언론이라는 단어가 508건, '승정원일기' 1,174건, 신하들의 상소문 모음집인 '간의등록'에 366건이 등장한다는 것

7) 헌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8) 헌재 1993.5.13.선고 91헌바17결정
9) 헌재 1998.2.27.선고 96헌바2결정
10) 헌재 2010.2.25.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결정

이다. 이를 통해 김영주는 '언론'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 일상적 용어로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언론'이 언책자(言責者)인 대간이나 소속 관청인 대각(臺省)과 관련해 나타나거나, 상소문에 나타날 때는 '군주나 정부의 정치 득실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언론'의 의미는 고대 중국 사서에 사용된 '단순히 말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등을 다양하게 함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영주, 2009, 53-54).

최정호(1998)에 따르면 '언론'의 용어는 원래 '말'에서 출발해 '매스 미디어'로 외연이 확대된 개념이다. 첫째 단계로 언론은 '말' 또는 '말하다', '의논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숙어로 언론의 가장 오래된 의미이다. 둘째 단계는 19세기 중반 이후 한자 문화권이 서양 문화를 수용하면서 사용한 개념으로 '언어를 통해 사상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다. 이때 언론은 구두언어로서 서양어의 'speech', 'discussion', 'logos', 'rhetoric', 'oratory'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다. 셋째 단계는 점차 '인쇄·출판'을 뜻하는 서양어의 'press'나 'printing'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다. 넷째 단계는 언론을 인쇄·출판의 결과물인 '신문(newspaper)의 통칭'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언론 개념은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정보전달의 대중매체(mass media)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최정호, 1998; 김영주, 2009, 52-53 재인용).

김영희·윤상길·최운호(2011)는 '언론'을 시사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을 뜻하는 저널리즘(journalism)의 우리말 표현으로 사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뉴스와 정보 제공(환경감시), 의견제시와 논평(상관조정), 교육, 오락, 광고 등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개화기에 근대적인 신문이 출현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 활동, 곧 시사적인 문제나 사실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논설을 분석한 이들에 따르면, 이 신문에서 '언론'은 본래의 의미로도 쓰였으나 점차 저널리즘 활동 곧 시사적인 문제나 사실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김영희·윤상길·최운호, 2011, 82, 99-100).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라고 불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매스 미디어로서 언론사나 언론인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아우르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도 이 기본권에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언론·출판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

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11]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이른바 '쥐코 동영상' 사건에서,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언론매체가 수행한 이러한 기능과 역할과 더불어, 개인의 표현행위도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매체가 다양해진 환경에서 개인은 적극적으로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표현도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2]

언론중재법 시기에 '언론'의 허위 보도를 이유로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간단없이 전개되었다. 양재규(2025)는 '허위 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라는 연구에서 1982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선고된 언론의 허위 보도 관련 67건의 민사 판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대법원에서 처음 소개된 '악의성의 법리'는 1988년 대법원이 도입한 '보도의 상당성' 법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있다. 보도의 상당성을 갖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성'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단계로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면책 결정이 이뤄지고, '악의성의 법리'는 보도의 상당성이 없는 때에만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보도의 상당성'과 관련해 다섯 가지 요소, 즉, ① 적시된 사실의 내용 ② 표현 방법 ③ 근거 자료의 신빙성 ④ 사실 확인의 용이성 ⑤ 보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13] 또 그에 따르면

---

11) 헌재 1992.2.25.선고 89헌가104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안전 보장은 다 같이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범위에서 알권리를 보호할지에 대한 한계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통치권자와 피통치자가 이념상 자동적(自同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자유스러운 표현 체계의 유지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확보하고 진리에 도달하는 수단이며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인 결단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변혁과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라서 정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한 경우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12) 헌재 2013.12.26.선고 2009헌마747결정

‘악의성’ 유무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14]

‘언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이해와 활용, ‘언론’을 개인의 자기실현이자 민주주의의 자치정체(自治政體)의 골간으로 파악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 판단에서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해 상당성 수준을 매우 완화하고 있거나 악의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법적인 차원에서 ‘언론’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언론’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의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 채널이 수행하는 여론 형성과 공적 토론의 기능이다. 김주용(2025)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특히 시사나 정치 채널 콘텐츠는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새로운 저널리즘 가능성을 열었고,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 관행은 저널리스트의 자격이나 역할, 뉴스 조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뉴스의 취재 과정, 뉴스 가치 등에 있어 전통 저널리즘과 다른 관행을 갖고 있는 개인 미디어 유형 온라인 저널리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용자들의 뉴스 이용 현황과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채널이 온라인 공간에서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확장된 저널리즘 영역 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 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자들의 활동을 저널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

13) 상당성의 법리와 관련해 양재규는 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몇 가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요구되는 보도의 상당성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 둘째,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상당성 수준이 매우 완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점, 셋째, 근거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해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수위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양재규, 2025, 168-169).

14)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의 법리는 언론의 보도가 허위이고, 상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지만 언론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법리가 최초로 적용된 사건은 2003년 7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전북도지사 관련 허위 브리핑’ 사건이다.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이라는 개념은 상당성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며, 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악의성은 미연방 대법원의 ‘현실적 악의’의 취지 및 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허위라는 것을 심한 부주의, 다른 표현으로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재규에 따르면 악의성의 부존재를 이유로 면책 판결을 한 어느 것에서도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판시했을 뿐 ‘악의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양재규, 2025, 148, 169).

이른바 '좋은 저널리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콘텐츠의 신뢰성, 공정성, 정확성 등 객관성 규범의 준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이 관련 채널의 생산자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 수준에 비춰볼 때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저널리즘 규범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주용, 2025, 66-70).

언론중재위원회(2025b)에 따르면,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이용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유튜브 채널의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이미 '언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공식 계정으로 운영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87.4%, 전현직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시사 채널에 대해서는 63.5%가 이를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5a). 2018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가 '뉴스 정보 플랫폼'이라는 인식은 52.5%, 2019년 실시된 조사에서 시사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언론'이라는 응답은 50%였다. 2019년과 2020년에 실시된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는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표 2> 유튜브와 '언론'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

조사기관	조사 명	일시	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2025	소셜미디어가 '언론' 역할 수행 65.1% (언론사 공식 계정 87.4%, 전현직 언론인의 시사채널 63.5% / 개인 유튜버/BJ 운영 시사채널 22.8%)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 조사	202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시사 정보 이용률 18.4% (이용한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98.7%) / 2023년 이용률 25.1%, 2022년 이용률 26.7%, 2021년 24.4%, 2019년 12.0%, 2018년 6.7%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2023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53% / 46개국 평균 30%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2021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44% / 46개국 평균 29%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	유튜브 콘텐츠 중 '뉴스/시사정보' 이용률 42.3%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2020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 45% (2019년 38%) / 40개국 평균 27%
시사IN	시민조사	2020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 - 유튜브 1위

시사IN	시민조사	2019	모든 언론매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 - 유튜브 2위 (1위는 JTBC)
미디어오늘	시민조사	2019	시사 유튜브 채널이 언론에 해당하는가 - 언론이다 50%, 언론이 아니다 33%[15]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2019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간 뉴스 관련 동영상 시청 40% /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26%
한국언론진흥재단	유튜브 인식 조사	2018	유튜브 콘텐츠 중 '시사/정보' 이용률 35.5% 유튜브는 뉴스 정보 플랫폼이다 52.5%[16]

유튜브 뉴스 이용의 속성을 연구한 최지향(2024)에 따르면, 유튜브 과이용자 그룹은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이 높으면서도 기성 언론을 통해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비시민적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정치 양극화 정도도 높았으며, 정치 지식, 정치 효능감 역시 다른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연·김동윤·김헌(2022)에 따르면, 유튜브 뉴스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민(2019)은 제도 언론과 유튜브 정치 채널들은 상호 공생 또는 상호 협조하면서 동시에 저널리즘적 정당성과 권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유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튜브 저널리즘은 주류 혹은 전문직주의 저널리즘 혹은 레거시 미디어와 단순히 대립 또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때로는 상호 협력하고 때로는 상호 공명하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 저널리즘 논의가 적어도 유튜브로 인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유용민(2021)은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속에서 기성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 정보를 습득하는 이용자들은 여전히 전문직주의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선희(2020)의 연구도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전통적 저널리즘이 유튜브를 배타적 경쟁 구도 속에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활용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들이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등록하되, 단기적인 수익보다 언론사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을 모색한다면 저널리즘적 성취를 넘어 수익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이 그러한 채널을 신뢰하는 이유를 탐색한 오해정·최지향(2022)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들은 기존 저널리즘 연구에서

15) 미디어오늘과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 2019년 10월 27~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결과(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ARS 자동응답시스템)

16) 양정애·오세욱(2018)은 "유튜브는 2006년부터 시작된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드디어 주류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언론 신뢰를 구성한다고 봤던 공정성, 정확성, 완전성 등 뉴스 품질을 높게 평가할 때 신뢰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정파성 기대부합 인식이 높을 때 역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파적 미디어인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뿐 아니라 유튜브 지상파 채널, 유튜브 종편 채널 이용자도 정파성 기대부합 인식이 높을 때 신뢰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정미(2020)는 유튜브 저널리즘의 공론장 활성화 기능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유튜브 저널리즘은 첫째, 정보 제공 기능, 둘째,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내는 기능, 셋째, 긍정적 공론장으로서의 회복, 넷째, 사회통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저널리즘으로써 기능 수행, 다섯째, 경제, 문화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다. 금준경(2018)이 지적하듯이 유튜브가 이러한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언론사의 태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시사, 정치 혹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기성 언론과 유사한 공적 논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 기능을 주목할 때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언론중재법의 체계 내에서 소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입법적 체계가 언론중재 제도의 성공적인 작동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 방식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해 보게 한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조정 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 대상을 보다 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일부 채널, 즉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언론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고 조정신청 및 각종 보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실무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25b, 48-49; 김주용, 2025, 52; 양재규, 2022). 국회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하려는 입법 개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위와 관련해 다음 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입법안의 내용과 특성,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3. 2005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특성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주체의 노력과 협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의 노력을 들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양경승 변호사에게 의뢰해 1998년 전문 45개 조의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성안하고, 2000년 정기 세미나를 통해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적 논의와 축조 심의를 통해 마련한 관련 법안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는 국회와 각 정당에 배포했다. 국회의 노력도 작동했다.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27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004년 10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접수했고, 김재홍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언론인권 센터’는 공동으로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서를 2004년 11월 29일 접수했다. 다음날 청원서는 임종인 의원의 소개로 국회 문광위에 회부되었다. 이 무렵 국회에는 문병호 의원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천영세 의원의 ‘언론피해구제법안’, 정병국 의원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언론피해구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각 행위 주체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이승선, 2011, 9-10).

언론중재 제도 도입 30주년에 즈음해 이승선(2011)은 한국의 언론중재 제도의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를 제거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언론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자발적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나,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구제 방식, 이를테면, 법 조항에 근거한 보도와 손해배상 외에도 유감 표명, 기사 수정, 재방영 금지, 기사 삭제, 검색 제한 내지 정정보도문의 검색 허용, 취재보도 개선 약속 등의 방법이 대화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둘째, 인격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 신장과 더불어 언론중재 제도가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방법으로 정착되는 성과를 낳았다. 셋째, 반론권과 언론중재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반론권 본래의 취지대로 정보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저널리즘의 취재보도 규범의 착근에 기여했다는 점이다(이승선, 2011, 16-18).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선(2021)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추정하고 있다. 첫째, 2009년 이후 법률안을 통해 개정하려던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광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둘째, 국가기관 간의 관할권 조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입법안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기구들의 활동이 확산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활동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넷째,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법률안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수용이 안 된 기존의 제안을 재탕, 삼탕 단순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다(이승선, 2021,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문제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하려는 여러 차례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내용도 신설되거나 기존의 권리를 정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검토했다. 첫째,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 매체나 범위를 확장하려는 내용, 둘째,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권리를 확장하는 내용, 셋째, 언론인이나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 넷째, 정정보도문의 작성과 게재 방식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실행과 관련한 내용이다. 언론중재법제정 이후 2025년 6월 5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모두 72개다. 회기별로는 17대 국회 11건, 18대 국회 10건, 19대 국회 9건, 20대 국회 12건, 21대 국회 23건 그리고 22대 국회 7건이다. 분석은 이승선(2021)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저장된 회기별 입법안과 검토 보고서 등을 출력해, 분석했다.

아래 <표 3>에서 보듯, 언론중재법제정 직후 유튜브 채널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의한 인격권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17대 국회 박찬숙 의원안(2005.11.1.), 노웅래 의원안(2005.11.8.)은 신문법의 인터넷신문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 신문의 범주로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 발의된 김승수 의원안(2022.12.27., 2024.7.17.)의 내용도 17대 국회의 박찬숙, 노웅래 의원안의 내용과 유사하다.

나아가 17대 국회의 박찬숙 의원안(2006.7.7.)과 최구식 의원안(2006.12.1.)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과 '신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

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박찬숙 의원안, 2006.7.7.),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상시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매체(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최구식 의원안, 2006.12.1.)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성안 자료를 토대로 2016년 발의된 곽상도 의원안이다(2016.10.28.발의). 검색서비스를 비롯해, 피해구제가 결정된 언론보도가 복제, 전파되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까지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법률안 제33조의6에 신설된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표 3>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법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제안

발의일	발의	기존	개정안	비고
2005.11.1.	박찬숙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5.11.8.	노웅래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6.7.7.	박찬숙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과 '신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006.10.10.	노웅래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신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신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홈페이지**	
2006.12.1.	최구식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상시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매체(국가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을 포함)	
2008.12.4.	성윤환	언론사의 언론보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	
		정기간행물	신문・잡지 등 간행물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신설
		언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등’)	
2008.12.24.	나경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신설
2009.1.13.	위원회	-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블로그, 1인미디어 ,카페제외)[17]	신설
		언론사의 언론보도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2016.10.28.	곽상도	보도 또는 매개(언론보도등)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언론보도등)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에 대해 수정,보완,삭제,필요한 조치청구[18]	신설
		-	**검색서비스**: 구제 결정, 재판 결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피해 구제청구[19]	신설 링크댓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을 하는 언론등의 게시판의 댓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해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댓글
		-	**피해구제 결정된 언론보도가 복제・전파되어 게시물이 소재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관리자, 운영자를 상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정정,피해구제위해 언중위에 조정신청(게시물 존재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신설
		-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언중위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안 제33조의6)	신설
2021.6.9.	박정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언론등[20]	신설
2022.12.27.	김승수	언론=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언론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2023.5.22.	윤두현	언론	‘언론’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	
		언론사	‘언론사’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	
2024.7.17.	김승수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 이하 “언론보도등”)	
2024.8.22.	임오경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권리는 주로 ‘열람 차단 청구권’이나 ‘검색배제 청구권’이 주를 이뤘다. 그 외에도 ‘기사 게재중지 조치 청구권’(노웅래 의원안, 2006.10.10.), ‘명백한 오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확인을 청구하는 권리’(최민희 의원안, 2013.3.21.), ‘언론보도 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 청구권’(김원이 의원안, 2020.12.1.) 그리고 최근 발의된 김장겸 의원안의 ‘조정 대상 기사 삭제요청권’이다(2025.3.10.).

2016년 발의된 곽상도 의원안은 정보통신망의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 검색서비스 피해 보도와 댓글, 복제·전파물 링크 삭제 청구권, 인격권 침해배제와 검색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권, 언론보도 등에 대한 언론사 운영 게시판의 댓글 삭제 등 조정 신청권, 피해구제 결정 보도 복제·전파된 사이트·게시판의 게시물 삭제 등 조정 신청권을 제안했다.

<표 4>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피해자의 권리 신설과 확장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6.10.10.	노웅래	기사 게시중지조치 청구권[21]
2013.3.21.	최민희	명백한 오보 언론중재위 확인 청구권[22]
2015.3.25.	김한표	기사삭제 청구권[23]
2016.10.28.	곽상도	정보통신망의 인격권 침해배제 청구권[24] 검색서비스 피해보도와 댓글, 복제・전파물 링크삭제 청구권[25] 인격권 침해배제와 검색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 신청권[26] 언론보도등에 대한 언론사 운영 게시판의 댓글 삭제 등 조정 신청권[27] 피해구제결정 보도 복제・전파된 사이트・게시판의 게시물 삭제 등 조정 신청권[28]

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인 이 법률안 제2조 제18호로 신설된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시행령’은(시행 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규정하고 있다(본조신설 2009. 8. 5.).

18) 해당 법률안에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안 제2조 제22호).

19) 해당 법률안에서 ‘검색서비스’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안 제2조 제23호). 법률안에서는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해당 보도문 및 그 보도물에 달린 댓글,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지체없이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제1항, 제2항).

20) 해당 법률안은 ‘언론등’을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는 면책되도록 규정했다(안 제30조 제6항).

2019.5.21.	신동근	열람차단청구권[29]
2020.7.31.	신현영	열람차단청구권[30]
2020.12.1.	김원이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방지 청구권[31]
2021.8.25.	위원장	열람차단청구권[32]
2021.11.11.	김의겸	검색배제청구권[33]
2025.3.10.	김장겸	조정대상 기사 삭제요청권[34]

21) 해당 법률안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의 매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게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게시 중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사가 게시된 날로부터 45일을 경과하면 안 된다. 언중위는 피해자와 언론사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심리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이유 있을 때 뉴스서비스제공자등에게 기사의 게시 중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안 제33조의2).

22) 해당 법률안의 제15조의2(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특례)에 따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명백한 오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언중위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고,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경우 그 다음 날 해당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언중위가 청구인과 협의해 작성한다. 언론사등은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게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등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안 제15조의2,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2호).

23)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삭제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5조의2).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이후 국회에 발의된 다른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삭제 청구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4) 해당 법률안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위법하게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이다 (안 제33조 제1항). 또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에 사정변경에 의해 현저하게 부정확한 것이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안 제33조 제2항).

25) 해당 법률안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에 따르면, 인격권 피해자는 삭제나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보도 및 그 보도에 달린 댓글 또는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6)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인격권 침해배제청구나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조정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안 제33조의3 제1항).

27)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인격권의 피해자는 언론사등의 게시판에 게시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안 제33조의3 제2항).

28)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삭제나 정정등 피해구제가 확정된 언론보도가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운영자를 상대로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이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내용이 게시된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구제 결정이나 재판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조치에 관해 직권조정안을 작성해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안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 제33조의3 제5항, 제6항).

29)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사등의 책임이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다. 몇 가지 특성이 현저하다. 첫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체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관계 없이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발의된 특징이 있다. 둘째,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문광부에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대체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다. 셋째,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로 하여금 그 수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17호의2).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다. (안 제17조의2 제1항)

30)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17호의2).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인데 그 내용은 위 신동근의원안(2019.5.21.발의)과 같다(안 제17조의2 제1항).

31)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제17조의3(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 구제)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7조의3).

3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안인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기사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사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性的)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다. 다만, 언론보도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기사열람차단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안 제17조의2).

33) 해당 법률안에서 ‘검색배제’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는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4) 해당 법률안의 제23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 특칙)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 중 일방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되면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 언론사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피해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 삭제요청”**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적 임시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정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3조의2).

<표 5>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사등의 책임·의무 강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11.7.14.	정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조정신청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2012.12.6.	정청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격권 침해, 손해액 3배 이내 배상
2013.3.21.	최민희	명백한 오보 정정보도문 방송, 게재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3.6.28.	정부	정정보도청구등에 알림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7.4.25.	주호영	정정보도청구 조정신청 표시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7.8.4.	송희경	언중위, 언론사등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시정명령 요청, 문체부 시정명령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8.5.9.	강효상	언중위, 고의·중과실 가짜뉴스 언론보도 시정명령 요청, 문체부 시정명령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0.6.9.	정청래	악의적 언론보도, 3배 이내 손해배상
2020.8.7.	정청래	언중위,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시정명령 요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2.4.	최강욱	언론위원회 시정명령 (위반시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비방목적 거짓, 왜곡보도, 평균매출액 이상 손해배상[35]
2021.3.19.	민형배	정정보도등 청구받은 언론사 수용여부 통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5.7.	김영호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정보도 표시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6.9.	박정	고의·중과실 허위보도, 손해 3배 이내 배상 정보통신망법 정보사업자인 언론등의 고의·중과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 3배이내 배상
2021.6.21.	윤영찬	고의·중과실 허위언론보도, 손해 3배 이내 배상
2021.6.23.	김용민	고의·중과실 허위·조작보도, 손해 3~5배 배상 기사제목 허위·조작보도, 독립적으로 손해배상 정정보도청구, 언론사 3일 이내 수용여부 통지, 인터넷기사 제목 본문에 표시
2021.8.25.	위원장	고의·중과실 허위·조작보도, 손해 5배 이내 배상
2023.2.6.	김홍걸	언론사, 인용보도 관련한 지침 마련해 자율적으로 준수
2024.5.31.	정청래	악의적 언론보도 인격권 침해, 손해 3배 이내 배상
2024.6.18.	김영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정보도등 통지, 표시의무 (위반시 3천만원이하과태료)
2024.7.17.	이정헌	정정보도청구등 받은 기사제공언론사 이 사실 게재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시정권고의 실무와 관련한 제안으로서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한 개정이 많았다. 징계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추후보도 청구권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거나, 추후보도 청구권 신청 기간을 해

35) 해당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나 권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2. 언론보도등으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 3. 언론보도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선별하거나 취재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안 제30조의2제2항).

당 사실이 종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6개월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또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원래 보도의 자리에 같은 크기로 게재하는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표 6>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시정권고 관련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5.7.27.	심재철	정정보도청구-민사집행가처분 삭제 / 시정권고와 공표 요건 강화
2005.10.27.	박찬숙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 소제기
2006.11.9.	전병헌	추후보도청구기간, 형사절차 종결사실 안날 3개월 / 정정보도청구소송, 민사소송법 절차 재판
2008.11.21.	한선교	직권조정불복시 서면 중재부에 이의신청
2008.12.4.	성윤환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재판
2008.12.5.	이혜훈	추후보도신청, 형사절차 안날 3개월/정정보도 통상절차
2008.12.24.	나경원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2009.1.13.	위원회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절차 / 피해자 아닌 제3자 시정권고신청 규정 삭제
2015.1.30.	이재영	시정권고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추가
2015.11.17.	우윤근	정정보도청구 등, 언론소송 가능 지법 합의부도 관할
2017.4.25.	주호영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7.8.4.	송희경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8.5.9.	강효상	추후보도청구, 6개월로 개정
2018.11.29.	박광온	언론 매체 특성 반영한 정정보도 세부기준 규정
2019.10.18.	한선교	정정·반론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2020.7.10.	정청래	정정·반론·추후보도 원보도와 동일 지면, 분량
2020.8.20.	박광온	정정보도 게재방식 구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0.11.19.	김영호	정정보도 대상 구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2.19.	송기헌	비위협의 행정처분 언론보도 - 추후보도청구권 허용
2021.3.19.	민형배	언론사 정정등 신청,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확대
2021.3.23.	유정주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추후보도 청구권 포함
2021.6.23.	김용민	정정보도청구, 안날 6개월, 보도일 3년 이내 / 정정보도청구 언론사 3일 내 수용 여부 통지 정정보도청구, 인터넷기사 제목, 본문에 표시 / 언중위 산하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 설치, 운영
2021.8.25.	위원장	정정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 정정보도청구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2023.1.5.	정우택	피해자 관할변경 신청,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정
2023.6.29.	김승남	언중위,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접수후 해당 기사 접근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 30일 이내
2024.5.31.	정청래	정정보도청구 안날 1년, 보도 2년 / 정정보도 등 원보도와 크기, 분량 동일
2024.6.18.	김영호	정정보도 청구 수용시 원보도와 같은 크기, 분량
2024.6.28.	민형배	정정보도청구 서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화 언중위 조정기일신청 접수일 14일에서 7일로 단축
2024.8.22.	임오경	행정처분, 추후보도청구포함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중재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거나, 중재위원의 규모를 120인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다. 또 중재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다거나 중재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중재위원의 추천권을 입법, 사법부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내용도 발의안들에 여러 번 담겼다.

<표 7>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주요 내용

발의일	발의	개정안
2005.7.27.	심재철	고충처리인 임의 규정화 / 중재위원 40-110
2005.11.25.	이재웅	중재위원장 상임 / 운영재원 국고(←방송발전기금)
2005.11.30.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2008.12.4.	성윤환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추가 / 고충처리인 삭제 시정권고 삭제 /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법
2008.12.24.	나경원	고충처리인 삭제 / 시정권고 삭제
2009.1.13.	위원회	피해자 아닌 제3자 시정권고신청 규정 삭제
2009.3.20.	장세환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2010.7.30.	정부	법령용어 순화, 문장조정, 간결화·명확화
2011.11.22.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2011.12.30.	진성호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결격사유 '언론사 소속 현직 언론인' →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2012.7.27.	김재윤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2012.9.10.	최민희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원 추천보완 / 중재위예산-국가일반회계
2012.12.6.	정청래	법률명 변경(언론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언론분쟁조정위원회
2013.6.3.	박창식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장 대통령 임명
2015.1.30.	이재영	시정권고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추가
2016.9.1.	변재일	중재위원 대통령 위촉 / 중재위원 추천권자 변경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 / 중재위 재원 - 방통기금, 국가 지자체 외의 출연금, 기타 등
2016.9.5.	노웅래	중재위원장 상임 / 중재위원 대통령위촉/ 재원 다양화
2017.8.4.	송희경	고충처리인 두지 않을 때 3천만원 과태료
2018.8.3.	백혜련	중재위원 결격사유 강화(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019.8.8.	이상헌	용어변경 (속행신청을 - 계속 진행 신청을)
2019.10.18.	한선교	정정·반론보도청구기간, 안날 6개월, 보도일 1년 이내
2019.10.31.	김영주	중재위원 90→120인
2020.6.23.	김영주	중재위원수 90인→120인

2020.7.10.	정청래	중재위원 추천 규정 구체화
2021.2.4.	최강욱	문체부소속 언론위원회 설치 / 중재위원 120명 / 언론위원회 조정신청 신문, 시정명령
2021.6.23.	김용민	언중위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 설치, 운영
2021.8.25.	위원장	중재위원수 확대 (60명~120명)
2024.6.28.	민형배	언중위 조정기일신청 접수일 14일에서 7일로 단축
2024.8.22.	임오경	중재위원 60~120명 확대 / 행정처분, 추후보도청구포함

4. 맺음말

현행 '언론중재법'은 반세기 전 '언론기본법'에서 채택한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포털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포섭하고 있는 정도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분류법 체계는 인격권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전통적인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언론 피해 구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시민 개인으로서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 또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의 개진과 여론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정체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고, 시사나 정치적 쟁점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언론'으로서 기능한다고 인식하는 시민의 평가, 매체로서의 언론, 언론인에게 적용하는 상당성의 법리 등을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와 인격권 간의 이익 조정에 활용하고 있는 각급 법원의 태도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 몇 가지 성격의 유튜브 채널은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 유튜브 채널로 인한 인격권의 피해구제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직선거 시기에 언중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간의 심의 충돌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권형둔(2024)은 유튜브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면서, 디지털 시대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언론 관계법이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층 구분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를 차별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계법에서 다양한 미디어 개념을 재정의하고, 수평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만이 아

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법 전반에 걸친 조정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모든 유튜브 미디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언중위의 조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행인, 주소, 연락처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 사용자에 대한 등록 의무가 부과될 터인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언론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곤란하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그리고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정의하고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권형둔, 2024, 55-56).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섭할 것인지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김민정(2024)은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된 언론사 운영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제작하는 유튜브 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플루언서 제작 유튜브 뉴스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타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 뉴스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김민정, 2024). 정경석(2024)은 댓글 작성자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보다 해당 콘텐츠의 삭제, 계정의 정지나 해지가 피해자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유튜브 운영자인 구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현행 법령상으로도 그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언론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그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과 같은 개별법의 개정보다는 EU처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더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정경석, 2024). 김주용(2024)은 방송 등의 제호를 내걸고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저널리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생산 주체의 형편을 불문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표할 내용에 대한 선별과 같은 초보적인 편성 행위조차 없었다거나 정기성 또는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김주용, 2024).

김주용은 최근 연구에서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하는 이

전 연구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생산·유통 행위 전체가 저널리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제공 행위가 공연성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중에의 지향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간의 사적 공유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매체 개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범주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셋째, 레거시 미디어의 언론으로서 요건 중 형식적 측면의 구비 여부, 이를테면, 정기적 공표 여부나 편집·편성 행위의 존부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중재법 적용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이 점이 불명확하다면 콘텐츠 내용 구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 보도문이 언제 업로드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유튜브 뉴스 콘텐츠 전반을 원칙적으로 언론, 언론보도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되 채널 구독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 점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규율하도록 한다(김주용, 2025, 79-81).

김주용의 제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를테면 17대 국회의 박찬숙 의원안(2006.7.7.), 17대 국회의 최구식 의원안(2006.12.1.발의), 20대 국회의 곽상도 의원안(2016.10.28.), 21대 국회의 김승수 의원안(2022.12.27.), 22대 현행 국회의 김승수 의원안(2024.7.17.)의 내용과 유사하고, 학술적인 논증을 통한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본다. 입법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김주용(2025)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몇 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동법 제2조의 '언론'에 각 언론의 정의에는 동조 제22호로 신설 제안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만 제22호에서 각 언론으로 포함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장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법적인 위상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함으로써 언론 중재와 실무 간의 괴리,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 보고자 함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의 댓글에 대한 법적 정비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관련 관할 기구 간의 토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정과 인력 확충,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등 여러 부문의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표 8> 김주용(2025)을 참고한 유튜브 뉴스 채널을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는 방안

현행	현행	개정 제시안	비고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제1호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_____말하며 각 제2조제22호의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제12호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_____,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제22호	-	22.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편성하여 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다만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6]	신설/수정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제23호	-	23.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사업자 : 제2조제22호의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수정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3	-	제1조의3(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22호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 이상으로 새로운 뉴스 동영상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널 구독자의 수가 주간 단위(혹은 월간 단위) 평균 1만 명 미만인 경우[37]	신설/수정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위에서 제시된 시안이 위헌성 심사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교하고 명료하게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언론중재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각 정당의 유기적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여하는 기구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36) 이 경우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에 위 언론중재법 제2조 제22호에 있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정의를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김주용, 2025, 82).

37)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채널 구독자 수 1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김주용(2025, 55, 83) 참조.

■ 참고문헌 ■

고시면 (2021).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2021.06.23.)에 대한 야당의 '언론재갈법' 등이라는 시각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62권 10호, 2-24.

권형둔 (2024).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7-57.

금준경 (2018). 유튜브와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49호, 48-57.

김민정 (2024).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9-64.

김선호·김위근 (2019). 유튜브의 대약진: <Digital News Report 2019> 한국 관련 주요 결과. <미디어 이슈>, 제5권 3호, 1-12.

김영빈·한혜경 (2023). 저널리즘을 성찰하는 공론장의 생성 조건: 저널리즘을 관찰하는 수용자, 투명성을 실천하는 저널리스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31권 4호, 318-392.

김영주 (2009). '언론' 유사 개념으로서의 '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5권 1호, 51-85.

김영희·윤상길·최운호 (2011). 대한매일신보 국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 대한매일신보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55권 2호, 77-102.

김익현 (2012). 시민 저널리즘의 본거지 유튜브 환호와 우려의 사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통권 503호, 6-9.

김주용 (2024).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특성과 언론중재법상 언론 혹은 언론보도 개념의 재구성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7-88.

김주용 (2025).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 연구: 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4권 1호, 43-93.

김영욱 (2025). 주목 권력으로서 언론의 성격 변화와 문제 해결 방안. 한국언론학

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1권 1호, 106-155.
노기호·강승식 (2004). 미국헌법상 상업적 언론의 개념과 헌법적 보호.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5권 2호, 275-325.
마정미 (2019). 유튜브 저널리즘과 공론장(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제19권 1호, 217-246.
박아란 (2025). 언론자유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법원 판결과 유럽연합 미디어자유법(EMFA)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1권 1호, 5-43.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4권 3호, 49-79.
박용상 (2002).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권 1호, 5-31.
박용상 (2025a). <신명예훼손법>, 박영사.
박용상 (2025b). 언론중재법 개정 제안: 2015-2016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해설(비발표 원고).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4호, 179-210.
신평 (2021). 진보법학자 신평 교수의 일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희대의 악법'. 고시계사 <고시계>, 제66권 9호, 171-178.
양선희 (2020).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전통적 저널리즘의 대응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1호, 245-262.
양재규 (2022). 유튜브는 언론매체가 아니다?. 반론보도닷컴 칼럼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28, 검색일 2025.6.3.)
양재규 (2025).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4권 1호, 137-184.
양재규·김창숙 (2011). 언론중재법 상 '언론'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통권 120호, 59-75.
양정애 (2021).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제7권 1호, 1-16.
양정애·오세욱 (2018).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미디어 이슈>, 제4권 8호, 1-17.
양형모·박주연 (2020). 신문기자의 유튜브 1인 방송 콘텐츠 생산의 특징과 저널리

즘 역할 인식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8권 1호, 33-59.

언론중재위원회 (2025a). 보도자료: 지난해 언론조정사건 3,937건, 피해구제율 72.5%.

언론중재위원회 (2025b). <2024 언론중재위원회 연간 보고서>.

오세욱·박아란·최진호 (2021). 한국, 뉴스 전반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중 공동 38위<Digital News Report 2021>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 이슈>, 제7권 4호, 1-17.

오해정·최지향 (2022). 유튜브 뉴스채널의 신뢰도 형성 메커니즘 분석: 뉴스품질 인식과 정파성기대부합 인식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제59권 1호, 50-91.

유승현·정영주 (2020). 뉴스 유통의 변동과 지상파 뉴스 콘텐츠의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상파방송 유튜브 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통권 111호, 68-109.

유용민 (2021).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의 뉴스 관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4호, 628-644.

유용민 (2019).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 논쟁하기: 행동주의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새로운 탈경계화. <한국방송학보>, 제33권 6호, 5-38.

유현재 (2025). 한국 정치, 유튜브 때문에 망하는 이유. <관훈저널>, 통권 174호, 49-60.

유현재 (2024).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방안 논의.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35.

이도연·김동윤·김헌 (2022). 이용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인식하는가?: 가짜뉴스 확산 경로 인식,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 행태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53권 1호, 269-288.

이성엽 (2025). 유튜브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관훈저널>, 174호, 61-67.

이소은·박아란 (2020).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 <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미디어 이슈>, 제6권 3호, 1-14.

이승선 (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18호, 7-19.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1호, 1-22.

이승선 (2023). 1인 미디어 범람 속 레거시 미디어의 책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발표자료집.

이승선 (2024). 디지털 시대 선거 보도 규제 법제의 쟁점과 진단: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의 취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70호, 4-17.

이용성 (2021). 피해구제 대상매체와 청구권 확장을 위한 언론중재법 입법방향 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5호, 541-557.

이재원·양정은 (2021). 연예 뉴스 생산자의 유튜브 저널리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연예 매체 채널의 콘텐츠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2권 3호, 29-54.

이종명 (2024). '영리(營利)'한 '항변(Advocacy)'의 시대: '취재'와 '보도'의 맥락에서 살펴본 비영리 언론의 '진지한 저널리즘' 실천.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0권 4호, 160-200.

이종명 (2022a).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 집단의 인식 연구: 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제30권 1호, 51-98.

이종명 (2022b). 유튜브의 '저널리즘적 실천'에 대한 갑론을박 : 학계, 업계, 수용자, 그리고 유튜버의 상이한 역할 인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장철준 (2023).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단국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47권 4호, 1-40.

정경석 (2024). 소위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소고.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5-69.

정주연·이재진 (2020). '언론자유 확장'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시론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31권 2호, 107-130.

정철운 (2018). 가짜뉴스·유튜브·극우보수와 저널리즘. 인물과 사상사 <인물과 사상>, 247호, 168-183.

조소영 (202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3호, 157-188.

조한나·이재진 (2023).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알권

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3호, 89-136.

최민재·김경환 (2021). 유튜브 저널리즘 콘텐츠 이용과 특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최정호 (1998.12.18). 言論과 正名-바른 말과 바른 이름. 최정호 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원고.

최지향 (2024).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누구인가? : 비이용, 간헐적 이용, 정기적 이용, 과이용층의 기성 언론 이용, 정치적 태도 및 시민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128호, 169-197.

최진순 (2012). 언론사와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참여와 공유의 플랫폼: '유튜브와 뉴스' 보고서로 본 저널리즘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501호, 84-87.

최진호·이현우 (2023).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 <Digital News Report 2023>으로 본 한국의 디지털 뉴스 지형. <미디어 이슈>, 제9권 4호,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a).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b).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a).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b). <2024 언론수용자 조사>.

함민정·이상우 (2020).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2호, 36-50.

허란 (2024). 저널리즘 원칙은 안중에도 없는 유튜버들 언론 역할 확대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1-75.

황용석 (2014). 디지털시대, 신생뉴스서비스의 등장과 법적 '언론성' 개념의 공백.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33호, 30-29.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4). *Digital News Report 2024*.